

# 휴머니티칼리지 운영 규정(4-1-6)

최종개정일 : 2019.01.28.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직제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교에 설치한 휴머니티칼리지(이하 ‘우리 대학’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휴머니티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머니티칼리지 기본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개발과 편성에 관한 사항
3. 동기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26., 2019.01.28.)
4. 파트너십트레이닝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01.28.)
5. 기초과학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01.28.)
6. 삭제(2019.01.28.)
7.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8. 글쓰기교육에 관한 사항
9. 삭제(2017.11.15.)
10. 기타 휴머니티칼리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RC(Residential College)센터는 RC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11.15.)

## 제 2 장 조 직

제3조(학장) ① 우리 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학부장) ① 본 규정에서는 학부별로 학부장을 두며,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부장은 담당 영역별 업무를 통해 학장을 보좌한다.

③ 학부는 자기주도성학부, 인문융합교육학부, 기초교육학부, 외국어교육학부로 나눈다.(개정 2015.11.26.)

- 제5조(주임교수) ① 본 규정에서는 학부별 산하에 업무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1.15.)
- ② 주임교수는 담당 영역별 학부장 업무를 보좌한다.
- ③ 자기주도성 학부는 동기유발교육, 파트너십트레이닝 교육으로 나눈다.(개정 2015.11.26., 2019.01.28.)
- ④ 인문융합교육학부는 4차 산업혁명, 인문소양,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융복합으로 나눈다.
- ⑤ 기초교육학부는 기초과학교육, 글쓰기교육으로 나눈다.(개정 2015.11.26., 2017.11.15., 2019.01.28.)
- ⑥ 외국어교육학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 등으로 나눈다.(신설 2017.11.15.)

- 제6조(직원) ① 우리 대학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장 및 담당직원을 둔다.(개정 2019.01.28.)
- ② 실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담당직원은 동기유발교육, 파트너십트레이닝교육,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초과학교육, 외국어교육, 글쓰기교육 등으로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11.26., 2019.01.28.)
- ③ 담당직원은 교양교육에 관련된 수업, 교무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01.28.)

### 제 3 장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 제7조(구성) ① 본 규정의 기본방침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01.28.)
- ②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휴머니티칼리지의 학장과 보직교수 및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본교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하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2019.01.28.)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간사는 팀장이 된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교양교육의 기본운영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01.28.)
- ②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01.28.)
- ③ 교양교육과정 교과목의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26. 2019.01.28.)
- ④ 삭제(2019.01.28.)
- ⑤ 삭제(2019.01.28.)
- ⑥ 삭제(2019.01.28.)
- ⑦ 삭제(2019.01.28.)
- ⑧ 삭제(2019.01.28.)

⑨ 삭제(2019.01.28.)

⑩ 기타 휴머니티칼리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삭제(2019.01.28.)

제10조 삭제(2019.01.28.)

제11조(소위원회) 각 업무영역별로 기본방침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소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학부장, 주임교수,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11.15.)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장이 되며, 간사는 담당직원이 된다.

③ 삭제(2019.01.28.)

## 제4장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개정 2019.01.28.)

제12조(편성원칙) ① 교양 교육과정은 대학의 목적과 목표,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부합되게 편성하여야 하며,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수요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의 명칭 또는 내용이 전공과정과 동일한 교과목은 교양과정에 편성할 수 없다.

제13조(교양 교육과정 편성) ① 교과목 신규편성을 요청하는 교원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교과목 신규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통해 편성한다.

② 교과목 편성 시 휴머니티칼리지 소속 교원의 경우 매학기 담당 교양교과목 개설을 우선한다.

제14조(교양 교육과정 운영) ① 교양 교육과정의 교양교과목 개설은 휴머니티칼리지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 교과목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하여 매학기 캠퍼스 별 교양교과목 개설 분반 비율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교양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교양교육원 규정은 폐지하며, 그 일체의 업무

와 시설 등은 본 기초교양교육대학이 승계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